#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0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서삼석·송갑석·이개호

임오경 · 전용기 · 주철현

황 회・박 정・신영대

신정훈 · 윤후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22일까지로 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포지구)에 다수의 기업이 자동차 부품단지·시험장조성, 수소차 인프라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제33조제6항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매립지 가액이 인근 도시용지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행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

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33조제6항).

#### 법률 제 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 리의 양도·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 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 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 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6조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6조 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 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 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 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 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 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 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 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 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